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3

발의연월일: 2021. 1. 14.

발 의 자:최승재·성일종·이주환

김정재 · 김예지 · 정동만

이종배 • 이명수 • 김은혜

양금희 · 김성원 · 김희국

윤영석 · 김도읍 · 권영세

홍준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는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 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난의 발생으로"를 "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하여"로 하고,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u>재난의 발생으로</u>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 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하여----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 -----<u>영업</u>손실보상, 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비・ 대응 · 복구 및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 감면 등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